

# 근세 일본에서 다이묘가(家)의 가족제도

## - 오카야마번 이케다가를 중심으로

정 하 영\*

### 요약

---

본고는 오카야마번 이케다가를 대상으로 근세 일본에서 다이묘가의 가족제도를 분석하였다. 다이묘가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가업(혹은 경영체)보다 혈통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분석해냈다. 다만 그 혈통은 법 혹은 신분에 따른 규정이나 조건의 제약도 받고, 혈통이 ‘절대적’이 아니고 현실 및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독 상속의 본질이 혈통 및 유서에 따른 봉록 상속, 적자선정의 유연성, 윤리나 명분에 위배된 양자선정, 이성양자, 심지어 지참금양자 및 양자리엔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혈통에 대한 ‘절대적’인 명분이나 윤리보다는 현실 및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주제어:** 오카야마번, 가업, 혈통, 가독상속, 양자

---

## I. 서론

근세 일본에서는 번주를 다이묘(大名), 번 혹은 그 가신단을 가쥬(家中)라고 하였다. 다이묘의 호칭의 근원도 가장을 의미하는 묘슈(名主)

---

\* 중국 중산대학남방학원(中山大学南方学院) 동아시아연구소 교수, 2021hyc@naver.com

에서 나왔고, 번의 직제(명) 및 법률 등도 가족과 관련된 용어를 사용하였다.<sup>1)</sup>

이와 같이 근세 일본의 가는 사회조직의 근기(根基)이고 막번의 정치구조와 문화의 핵심원리이다. 따라서 카사야 카즈히코(笠谷和比古, 1993)는 번은 이에(家)의 원리에서 비롯되었고, 아루가 기자에몬(有賀喜左衛門, 2000)은 막번 체제를 이에 연합체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고,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 2010)는 막번 체제를 가직(家職)으로 연결된 체제(국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막번(체제)이나 다이묘가는 이에의 원리에서 비롯되고,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에서 다이묘가(혹은 무가)보다 서민의 이에 제도의 분석에 치중되었고,<sup>2)</sup> 혹은 서민의 이에 제도를 바탕으로 무가를 분

---

1) 번이라는 용어는 근세 일본 유학자들이 종종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도를 생각해서 사용했지만, 정식적 용어로 사용한 것은 메이지 이후이다. 이 당시는 주로 가추, 다이묘 등을 사용하였다. 다이묘의 호칭의 근원인 묘슈와 카추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묘슈가 묘덴(名田)을 지배하고 무사의 가(가족과 예속자를 포함, 이하 무가[武家]라고 표기)을 통솔하고 그 지역의 실질적 지배자가 되면서 다이묘라고 불리어졌다. 이는 묘슈가 가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추는 중세에 소료가(總領家, 즉 본가)와 분가 등에서 이루어진 이치몬(一門)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후에 이치몬에 후다이 가신이 더해지자 의제(擬制)로서의 가 조직으로 재편성되고, 여기에 새롭게 복속시킨 고쿠진 영주(國人領主, 지방호족) 등을 포괄한 것으로 소료(總領, 즉 적자, 전국시대에는 다이묘)와 가신단 전체를 말하는 것이다. 에도시대의 가추는 특정의 다이묘의 가신단 혹은 다이묘를 포함한 번 전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번, 번주, 다이묘, 가추 등에 대해 혼용해서 표기한다. 이외에도 가족과 관련된 용어로, 지번(支藩)을 분가, 다이묘가 반포한 법을 가작법(家作法 혹은 가지법[家之法], 가신이 다이묘가를 오이에(お家) 혹은 어가(御家), 번에서 최고의 직책인 가로(家老), 부하 혹은 가신을 계닌(家人) 혹은 게라이(家來)라고 불렀다.

2) 위와 같은 경향은 문화인류학분야에서 많이 보인다. 물론 법제사와 역사학 분야에서 무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법제사 분야에서는 무가, 특히 가독상속과 양자 및 혼인제도의 제 법령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그 특질을 분석하지만, 하나의 사례를 갖고 그 내부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실제 운용과정과 양태를 규명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역사학 분야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무가의 구체적인 제도와 운영 및 실태 등을 분석하지만, 문화인류학 분야와 같이

석한 경우도 많다. 심지어 양자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고 어떤 주제에 대해 논리의 합리화를 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와타나베 히로시(渡辺浩, 2010)는 이에, 특히 가업(가직)과 봉공에서 출발하여 (중국과 한국과는 다른)이에의 영속성 및 직분의식, 효와 충의 일치라는 일본유학의 특수성을 논의하고 있다. 카사야 카즈히코(笠谷和比古, 1993; 2006)도 이에를 원형으로 하는 일본 조직은 능력주의 및 유연성, 상하합의와 응집력의 특성을 지니고, 이러한 특성이 근대화의 성공을 이끌어 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일본의 이에는 큰 범위에서 (계층 혹은 신분 구분 없이)공통점이 존재하지만, 분명 차이점도 존재할 것이다. 즉 각 계층이 어디에 더 중점을 두었나하는 경향성(원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가는 중세에서 근세 초기에 확립되고, 이 무가의 가족제도가 근세 중후기에 서민에게 확산 내지 정착되고, 메이지 민법에서 무가의 가족제도를 근거로 일본의 가족제도를 제정하였다(川島武宜 2000, 152).<sup>3)</sup> 이런 점에서 보면, 이에의 원형은 바로 무가이므로, 서민의 이에 보다 우선 무가의 가족제도를 분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무가의 가족제도 중에서 핵심은 가독상속(이와 연계된 양자제도)에 있기 때문에 가독상속의 본질을 파악해야 다이묘가(혹은 무가)의 가족제도의 특징과 문화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는 오카야마번

---

무사의 가족제도의 구조 원리와 문화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는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3) 메이지 초기까지만 해도 동북지역은 아네가도쿠(姉家督,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 즉 장녀)상속(실질적으로 데릴사위가 상속)이 있고, 서남지역은 말자(末子)상속을 널리 행하였다. 그리고 동북지역은 나고(名子)·히칸(被官, 후다이 농민)이라고 하는 (비혈연적)예속적 봉공인을 포함하여 가족(도조쿠)을 구성하였다. 이 아네가도쿠와 도조쿠를 채택하는 이유는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大間知篤三 1993, 4-7). 그리고 일본에서 일상 및 학술용어로서 이에 및 도조쿠라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사료상의 무사들의 이에에는 가 혹은 무가와 그 친족단체인 ‘도세이’ 혹은 이치몬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특히 서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 및 학술용어를 서술할 때는 주로 이에 및 도조쿠의 용어를 사용하고, 무사들의 이에에는 무가 혹은 가의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이케다 가의 사례를 가지고 가독상속의 본질과 특징을 파악하여 다이묘가 가족제도의 구조와 문화를 도출하려고 한다.<sup>4)</sup>

일본의 주변부(예를 들면, 죠슈번이나 사쓰마번 및 동북지역의 번)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도자마 다이묘(外様大名)가 많은데, 이들은 깊은 역사와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근세 다이묘가와와는 다른 가계(家格) 및 직제 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가계에 따른 편성 원리와 생활양식이 근세 다이묘가와와는 약간 다르다. 이에 비해 오카야마번은 혼슈 중부에 위치하고, 또한 위의 번에 비해 역사가 그다지 깊지 않고(수차례 전봉[轉封]) (비록 도자마 다이묘이지만)도쿠가와 가와 관계도 깊기 때문에 근세다이묘가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가족제도와 관련된 예를 들면, 다이묘는 가신과의 유서와 친소관계에 따라 가신을 후다이(譜代, 대대로 같은 주군 혹은 집안을 섬기는 사람 내지는 집안)와 신참자(新參者), 그리고 더 나아가 가계를 더 세분하여 차별화를 행하였다. 이는 주변부의 도자마 다이묘를 포함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지만, (주변부와는 달리)오카야마번은 가계(직제)의 용어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편성 원리 및 가계에 따른 생활양식 등이 근세 다이묘가와(거의) 동일하다. 오카야마번은 슈인다카(朱印高, 쇼군으로부터 공적으로 받은 석고)가 31만 5천석이므로 대번(大藩)에 속한다. 그리고 칸에이(寬永)9년(1632)에 초대 번주 이케다 미쓰마사(池田光政)가 오카야마로 입봉(入封)하고부터 전봉 같은 것 없이 메이지유신까지 존속하였다. 소번(小藩)에 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표성 내지는 표준화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오카야마번은 특수성도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

4) 필자가 문헌조사를 행한 결과, 한국에서 일본 무가(다이묘가)의 가족제도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한 문헌이나 논문을 찾지를 못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고는 학술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문에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후술하는 것처럼, 오카야마번의 지번인 가모카타번(鴨方藩)과 이쿠사카번(生坂藩)은 본가에 대한 강한 종속성으로 인해, 이 지번들을 (일본에서) 오카야마번으로 통칭되곤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오카야마번뿐만 아니라 지번도 포함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술한 것처럼, 일본학계에서 무가 혹은 이치몬(一門) 혹은 ‘도세이(同姓)’의 개념 및 그 본질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 되지 않고, 서민의 이해와 혼용 혹은 애매하게 사용하고 있다. II장에서 이들 개념에 대해 기존의 문헌연구의 바탕 위에 위의 개념과 특징을 정리하면서 무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개념을 분석하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본고는 무가(원래 무가라는 개념은 급인[給人], 즉 치교토리[知行取]라고 하는 영주이고 세습되는 가를 말함)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sup>5)</sup> III장에서는 가독상속에 대해 분석을 한다. 가독상속의 본질을 분석해내고 오카야마번 이케다가를 분석한다. 단 이케다가 뿐만 아니고 오카야마번 가신들도 분석 대상으로 삼아야 가독상속의 본질을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쇼군 혹은 다이묘도 근본적으로 무사이고, 또한 막부(쇼군)와 번(다이묘)의 관계는 다이묘와 가신의 관계와 동일한 구조와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IV장에서는 가독상속과 밀접한 양자제도를 분석한다. 무가에서의 양자를 선정하고 들이는 것이 가독을 상속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외 다른 목적으로 양자를 들이는 것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막부법과 번법의 원칙이다. 여기서 한국의 양자제도와는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비교 관점도 나타날 수 있다.<sup>6)</sup>

5) 농민과 상인의 이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무가와 비교는 금후의 과제로 한다.

6) 지면의 관계도 있고, 또한 본고는 오카야마번의 이케다가를 사례로 분석하여 양자제의 특징을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한국과의 비교는 생략한다.

## II. 이에·도조쿠 및 ‘도세이’·이치몬

일본의 이에 및 도조쿠에 대한 개념정의가 명확하게 정의 되지 않았다. 이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흔히 아리가-기타노 논쟁)에서 이루어졌다.<sup>7)</sup> 하나는 이에를 생활공동체(경제체)로 파악하는 아루가 기자에몬의 이론이다. 다른 하나는 이에를 역사적 특수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기타노 세이치(喜多野清一)의 가족 친족 이론이다. 즉 기타노 세이치는 이에 구성의 핵심적 요소로 부부결합을 중핵으로 하는 핵가족 단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비혈연(친족)원을 가족 구성원으로 파악하는 아루가의 이에 이론에 대해서 비판적이다. 그러나 이에에 실제적으로 비혈연적(친족)성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아루가의 이론이 기타노의 이론보다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아루가 이론을 계승하여 이에를 생활공동체로 파악하는 나카네 치에(中根千枝)는, “이에는 주거, 경제적 요소를 전제로 하고, 가의 연속을 위해서 가장 계승의 존속을 원리로 하는 집단이다(中根千枝 1970, 431).” 생활공동체 혹은 경제체라는 개념에는 이에 성원들이 가업(및 가산)을 운영한다는 의미가 포함된다. 아루가와 나카네가 연구대상으로 한 농민의 가업은 농업을 경영하는 것이다. 이시이 료스케(石井良助)는 농민(서민)과 같이 무사의 이에도 가업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단 농민의 이에와는 달리(농민의 가에서는 묘지[苗字]가 없기 때문에 가명[家名]이 없는데 비해)무가에서는 가명이 중시 된다. 카사야 카즈히코도 가업에 중심을 두면서, “이에란 가산(소령[所領]), 가업(무예[武藝])을 유지 계승을 목적으로서 구성되고, 가명의 연속성을 상징으로, 부-자-손으로 이어지는 부계직계친족에 의해 계승되어가는 사회단위이다(笠谷和比古 1993, 15).”

7) 이에 대한 논쟁은 임경택(1999)의 서평을 참고하라.

그러나 위와 같은 정의는 가업과 생활공동체(경영체)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리고 와타나베 히로시도 가업(혹은 가직)에 중심을 두면서, “이에란 혈연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종의 (개개인을 초월하여 영속하는)형식적인 기구이다. 이 기구에는 가업·가명·가문(家紋)·가독·당주(当主, 가독 계승자로 한국의 가장 혹은 장손 혹은 종손에 해당)가 있으며, 구체적인 가족제도로써 이성양자(근친혼도 포함)가 이루어지고, 당주는 (혈통의 계승이 아닌)가업을 영위하기 위한 대표자 내지는 관리자이며, 가독(혹은 가산)상속에서 단독 상속제를 취한다(渡辺浩 2010, 117-160).” 이와 같은 이에 대한 정의는 전술한 학자들과 비슷한 맥락이고, 특히 “무가의 가업을 봉공(渡辺浩 2010, 155)”이라고 하는 점은 이시이 료스케의 관점과 동일하다.

카와시마 타케요시는 위의 학자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일본의 가족 제도를 가부장제라 하면서 무가는 서민의 이에 보다 명확하게 혈통을 중시하였고(그는 양자 등을 들이는 것에 대해 의제적 혈통이라고 칭함), 이러한 혈통 중시의 가부장제를 메이지 민법에서 공식화 내지는 표준화를 행하였다(川島武直 2000, 155).” 그리고 그는 가부장제를 호주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지배 복종의 관계로 보고 있다.<sup>8)</sup> 여기서 위의 학자들의 논점을 무가를 통해 살펴본다.

막부법 및 번법 등에서는 혈통을 중시하고 실제적으로도 가족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혈연이고 직계가족(방계친도 포함할 수 있으나 그 구조 원리는 부-일자(一子)로 계승하는 직계가족의 원리이고, 후에 분가 등을 통해 친족관계 내지는 단체를 형성)으로 구성된다.<sup>9)</sup> 이는 무가 봉

8) 호주권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주는 가족구성원의 결혼·다른 집으로 양자로 가는 것을 허락할 권리, 가족 구성원의 거처를 지정·분가를 허가할 권리, 호주의 명령에 반한 경우 처벌할 권리, 외부자를 가족구성원으로 들이는 것에 대해 결정할 권리 등. 이와 더불어 호주는 가독(가산)의 단독상승을 한다(川島武直 2000, 171-172).

9) 『寛永10年侍帳』를 보면, 한 반구미(番組) 내에 부자, 형제 등이 많이 기재되었다.

공인과 야카이(厄介, 귀찮은 존재라는 의미, 보통 차남이하를 말함)의 구성원에서 잘 나타낸다. 무사는 지행(知行)을 배령 받는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중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 무가 봉공인(奉公人)을 고용한다. 예를 들면, 덴나(天和)4년(1685) 오카야마번 군역에 따르면 1백석 당 4인의 봉공인을 고용해야 한다(岡山市史, 2279).<sup>10)</sup> 그러나 평화 시에 이 무가 봉공인은 무사의 집에 거주하는데, 이들은 이에의 성원이 아닌 고용인으로서 세대 구성원에 불과하다.

근세 중기 이후 가독의 단독상속제에 따라 야카이 문제가 발생한다.<sup>11)</sup> 야카이는 일반적으로 당주의 봉록으로 부양되는 차남이하를 말하는데, 방계친(혹은 부계든 모계든 혈연관계가 얇은 친척)도 당주의 봉록에 부양되면 야카이라고 할 수 있다.<sup>12)</sup> 이와 같이 야카이는 혈연관계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후술하는 가독상속에서 혈통이 중시되고, 실자가 있거나 외부적 조건이 허락하면 혈통에 따라 가를 잇는다. 단 혈연자가 없거나 경제 혹은 현실적 조건이 안 될 경우 비로소 이성양자를

---

이는 중세적 유품(즉 일족 모두 하나의 조에 편성된 군사집단)이 아직 잔존하고, 아직 적자 단독 상속제가 확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그리고 『寛永19年侍帳』에도 약간 위와 같은 것이 보이나, 『備前藩士帳(1711-1716)』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단독 상속제와 (기본적으로)직계가족의 형태가 정착되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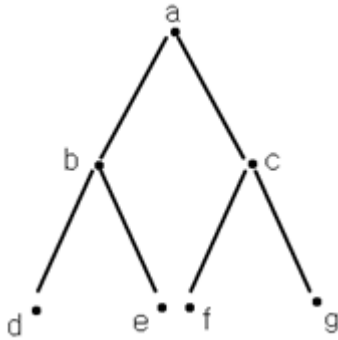
- 10) 무가 봉공인은 와카토우(若党, 전쟁 시에는 전투에 참여하지만 평시에는 주인의 잡무와 경호를 담당), 츄우겐(中間, 전쟁 시나 평상시에 도구함을 드는 자). 그리고 코모노(小者, 즉 하인, 이중 직신을 든 자를 조리토리[草履取]라고 함) 등이 있다.
- 11) 근세 전기는 분할상속이 행해졌다. 이 시기는 신전(新田)과 가증(加増)이 있어 분할 상속할 여유가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무사(無嗣)로 인해 절가가 되는 것 보다 분가를 만들어 중가의 대를 계승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분할 상속을 취했다. 그러나 근세 중기 이후 신전 및 가증이 없어지고, 더구나 그동안 분할 상속에 의한 가산의 분산 및 가격의 저하를 가져오고, 번의 재정적자에 따른 봉록 삭감정책 등으로 인하여 분할 상속의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단독 상속제를 취했다. 이러한 사정은 거의 모든 번과 가신들도 마찬가지이었다. 근세 중기 이후 단독 상속제에 따라 야카이가 문제가 많았다. 다이묘가든 일반 무사든 관계없이 야카이는 양자로 가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다. 그러나 양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은 적은 반면에, 야카이가 있는 집은 많기 때문에 양자만으로 야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 12) 당주는 가장의 의미도 있지만, 무가의 경우 사료용어로 당주를 사용하였다. 메이지 민법에서는 호주와 가장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일본에서 가장이라는 용어 사용과 서민의 이에 장을 무슨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금후에 검토하겠다.

포함한 양자에 의해서 계승된다. 따라서 무가를 혈통보다 가업을 중심으로 한 생활공동체 혹은 경영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가장권 혹은 당주권의 한계를 살펴본다. 가족 구성원이 혼인하고자 할 경우 당주가 번청에 청원하고 양카이가 다른 집으로 양자로 가고자 하는 경우 당주의 허락이 필요하고(磯田道史 2003, 76), 또한 번청에서 신규모집이 있을 경우 당주가 양카이를 추천하여 원서(청원)를 제출한다. 이와 같이 당주는 양카이를 포함한 가족 성원의 신분전환과 혼인 및 양자에 관한 청원권 내지는 동의권을 갖고 있어 강한 권력과 권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하라후지 히로시(服藤弘司)는 종전의 연구, 즉 근세 중기 이후 단독상속제가 정착됨에 따라 당주권(가장권)이 아주 강력했다는 논의와는 달리, 오히려 당주권이 약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번의 재정적자에 따라 봉록이 삭감되어 분할 상속할 여유가 없었고 또한 양카이를 부조할 수 없고, 그리고 번의 재정적자로 인해 신규모집이 거의 없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당주의 권위는 상실되고, 양카이는 종종 사풍(士風)의 퇴폐와 악행을 저질렀다(服藤弘司 1982, 516). 거의 모든 번에서 양카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하라후지의 논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이는 카와시마 타케요시가 논한 것과 같이 가장권 혹은 당주권이 절대적이고 전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조쿠는 경제적 기반 위에 본분가 관계에 의해 성립하는 두개 이상의 이에의 총칭이다. 이 도조쿠가 거주와 경제적 조건에 의해 집단화 내지는 조직화한 것이 도조쿠단(團)인데, 흔히 도조쿠라고 한다. 이 도조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조쿠는 본부 간의 계보관계를 지니고 있다.

〈그림 1〉 도조쿠에서의 본분가 관계



출처: 中根千枝(1970)을 약간 수정하여 작성

a-b, a-c의 관계는 계보적으로 직접 연계 되어 있는 것에 비해 b-c의 관계는 간접적 연계에 불과하다. b,c는 이들의 형제나 사촌이기 때문이 아니라 a와의 관계에서 도조쿠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다. d는 b와의 관계로 도조쿠 성원이 된다. 즉, b와 d(혹은 b-e, c-f, c-g)의 관계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b가 분가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완전히 b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는 b가 어느 정도 독립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b관계에 비해 a-d관계는 훨씬 약하다. b, c관계는 세대가 지남에 따라 관계가 희박해져 간다. 하여튼 동족의 모든 이예를 포함하는 전체 계보 보다는, 가장 중요한 계보관계는 직접 관계를 가진 두 이에 사이이다. 둘째, 본분가 사이에는 엄격한 위계적 관계가 존재한다(분가 사이에도 서열관계가 존재). 이는 계보적 우월성과 월등한 경제력에서 기인한다. 단 본가가 설령 계보적 우월성이 있더라도 별로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 혹은 본가가 독립할 경제적 기반이 있을 경우, 혹은 일상생활에서 본가에 별로 의존할 필요가 없을 경우, 도조쿠 내부의 이에 간의 관계는 약화 내지는 해체하게 된다. 셋째, 거주 의 인접성으로 도

조쿠는 한 촌락 내에서 인접한 이웃의 형태로 존재할 때만이 유지, 강화된다. 넷째, 이에와 같이 거주와 경제적 조건을 전제로 하는 도조쿠는 비혈연(친족)원을 분가로 만들었다(中根千枝 1970, 442-443).

위의 나카네 치에의 분석은 아리가 기자에몬이 분석한 (동북지역 촌락에 분포한) 나고(名子)제도의 구조 원리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오시마 마리오(大島真理夫)는 위와 같은 이에연합을 종적 계층형과 횡단 계층형의 촌락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두 유형의 촌락에서의 가격제(家格制, 지배복종의 관계) 지배와 본분가관계를 분석하였다. 전자는 사회경제(지배관계 혹은 우월적 지위)적 측면에서 가와 가 사이에 종적관계로서 결합되어진 것이고(주로 동북지역에 분포), 후자는 가와 가 사이에 종적인 관계가 아니고 주로 계층 상호 간에 상하관계로 결합된 것을 말한다(주로 긴키[近畿]지역에 분포)(大島真理夫 1993, 316). 타니구치 스미오(谷口澄夫)가 연구한 오카야마번의 사례를 통해 전자의 유형을 살펴본다.<sup>13)</sup> 신전(新田) 개발에 관계한 와키(和氣)·호소다(細田)·시마무라(島村) 3가가 입촌하였다. 칸세이(寬政)10년(1798)에, 와키가에는 본가 분가2(가)·비혈연 별가(別家, 분가를 의미하는데, 특히 상가나 농가에서의 비혈연 분가를 의미)2(가)가 있고, 호소다가는 본가 분가2(가)·비혈연 별가1(가)가 있고, 시마무라가는 본가 분가2(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후 겐로쿠(元祿) 시대에 와키가의 일족(후에

13) 후자의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쇼칸슈(庄官衆)는 원래 조상은 사무라이이었으나 1578년에 전투에 패해 농촌으로 귀농한 후손들이다(13가이므로 카모쇼칸슈[加茂庄官衆]13파라고 칭하였음). 이들은 촌락에서 우월적 지위와 특권의식으로 촌을 지배하였으나, 오카야마번의 소농민 육성 및 자립정책으로 인해 탄압을 받았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그들은 일반백성(平百姓)으로 전락되었으나 여전히 쇼야(庄屋) 등의 촌역인(村役人)을 맡고 카미시모(袴, 예복)를 착용하고 묘석에 가명을 새기었다. 그들은 일반 백성들의 위와 같은 특권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다(谷口澄夫 1995, 191-195). 타니구치는 계층 내의 본분가에 대해 분석을 안했지만, 오시마의 사례에서 쇼칸슈 계층 내 각 가는 본분가를 형성하였다.

7가가 됨)과 비혈연자이지만 와키성을 받은 1가가 촌에 들어와, 160년간 총 19가가 되었다. 와키 본가가 쇼야 혹은 다이쇼야(大庄屋, 몇 개 촌을 관리하는 역인)를 맡아, 가부장적인 지위로 강력한 신분적 계층관계를 형성하였다(谷口澄夫 1995, 196).<sup>14)</sup>

위의 사례, 특히 종적결합(계층)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도조쿠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특징은 비슷하다. 그 특징은 본분가 간의 계보관계와 서열관계가 존재하고, 한 촌락 내에서 관계가 유지되고, 비혈연 분가를 세우는 것 등이다. 그리고 오시마의 사례분석에서는 분가가 분가를 세우기도 한다(大島真理夫 1993, 320).

무가의 친족 혹은 친족 단체는 이치몬(세속적 용어로 일족[一族]이라고도 함)·‘도세이’·신루이(親類, 우리나라의 친척과 같은 의미)·엔자(緣者, 인척)가 있는데 이들 범위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다.<sup>15)</sup> 이중 일본학계에서 ‘도세이’와 이치몬을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나카타 가오루는 ‘도세이’를 주로 호칭으로 본분가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했다. 더구나 그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이치몬 혹은 일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치루이(一類)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치루이를 신루이·엔자·원류(遠類, 먼 친척)·본분가를 총칭하는 것이라고 한다(中田薰 1926, 576). 오오모리 에이

14) 와키가의 위치를 보면, 횡단 계층형 촌락의 면도 있다. 금후 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두 유형의 적절성을 세밀하게 분석할 것이다. 오카야마번의 가족구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세 초기)분가로 인하여 농업경영의 영세화와 담세 능력의 저하라는 상황 하에서, 조묘(貞享)이후 번은 원칙적으로 별가를 세우는 것을 제한하였다. 단 황무지 개간 등 특별한 경우에만 별가를 허락하였다. 그러나 덴메이(天明)·칸세이 이후 상품경제의 발전과 지주·소작제의 전개와 더불어 대가족이 해체되고 소가족이 형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번은 별가를 세우는 것을 대폭 허락하였다(谷口澄夫 1995, 198-202).

15) 신루이는 혈연과 혼인을 매개로 이루어지고, 따라서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부계, 모계, 부(夫)계, 처계로 연결되는 일정 범위내의 친족을 말한다. 엔자는 인척으로서 보통 처의 부모와 형제자매까지를 말하는 것이다(中田薰 1926, 549-570).

코는 막부와와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어 다이묘가의 이치몬 구성원을 배신(陪臣)을 제외한 본분가 다이묘와 하타모토(旗本, 쇼군의 직신)로만 구성된다고 한다(大森映子 2010a). 그러나 이는 막부와와의 관계에 강조점을 두고 파악한 것으로 보다 넓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고문서에서는 본분가의 관계를 ‘도세이’라는 용어 내지는 호칭을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막부에서 편찬한 『寬政重修諸家譜』 나타나는 본분가를 포함한 (종가를 중심으로 한)부계혈족이 이치몬(혹은 일족)이라고 할 수 있다. 『寬政重修諸家譜』에서 이케다가의 이치몬은 본가를 포함해서 30개 파(流)로 구성되었다.<sup>16)</sup>

16) 여기서 간략하게 이케다가의 역사를 살펴본다. 이케다가의 기초를 닦은 것은 이케다 쓰네오키(恒興)이다. 부친(타키카와사다가쓰[滝川貞騰]의 삼남으로 이케다 마사히데(秀)의 데릴사위)이 사망하자 모친이 오다 노부나가의 유모가 되어, 쓰네오키와 노부나가 모유형제가 되고, 후에 쓰네오키는 노부나가의 가신이 되었다. 그는 여러 공을 세워 이누야마(犬山)성을 하사 받았으나, 나가쿠테(長久手)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공격을 받아 장남 모토스케(元助)와 함께 전사하였다. 그의 차남 이케다 테루마사(輝政)가 가독을 이었다. 그는 정실 이토히메(糸姫)와 이혼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딸이자 과부였던 도쿠히메(督姫)를 후실로 맞이하였다. 그는 하리마국(播磨國) 히메지(姫路) 52만석을 영유하고, 도쿠히메의 소생인 타다쓰구(忠繼) 등이 오카야마번 등의 번주가 되었다(본인과 자식들의 영지를 포함하면 86만석). 따라서 이케다가에서는 테루마사를 중흥의 시조로 여기고 종가의 시조로 삼겼다. 이케다 토시타카(利隆)는 테루마사의 적장자로 가독을 계승하였다. 그는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秀忠)의 양녀 쓰루히메와 결혼하여 도쿠가와와의 관계를 강화하였다. 그의 적장자가 이케다 미쓰마사(光政)인데 처음에 유소자(幼小者,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자)라는 이유로 이나바(因幡國) (돗토리 지역)으로 전봉되었다가, 나중에 오카야마번 번주 이케다 미쓰나카(光仲)를 유소자라는 동일한 이유로 돗토리번으로, 미쓰마사를 오카야마 번으로 전봉되었다. 그는 실질적인 오카야마 번주로 일본에서 명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그는 차남 마사코토(政言)에게 신전(新田) 2만 5천석을 분여하여 가모카타번, 삼남 테루토시(輝録)에게 본가 소령 1만 5천석을 분여하여 이쿠사카번을 창설하였다. 그리고 돗토리번도 사카노번(鹿野藩, 2만 5천석, 나중에 3만석)과 오카사번(若桜藩, 1만 5천석, 나중에 2만석)을 창설하였다.

<표 1> 이케다 이치몬 파벌

| 쓰네오키  |        |        |       |        |        |        |        |        |        |        |        |        |       |
|-------|--------|--------|-------|--------|--------|--------|--------|--------|--------|--------|--------|--------|-------|
| 1     | 유키스케之助 | 테루마사輝政 |       |        |        |        |        |        | 나가요시長吉 | 나가마사長政 |        |        |       |
| 2     | 요시유키由之 | 모토노부元信 | 토시타카  | 마사토라政虎 | 토시마사利政 | 타다쓰구忠繼 | 테루스케輝澄 | 마사쓰나政綱 | 테루오키輝興 | 나가요시長幸 | 나가사다長貞 | 쓰네오키4남 |       |
| 분파/가계 | 유키스케之助 | 유키마사之政 | 본계本系  | 마사히로政昭 | 마사히로政昭 | 마사히로政昭 | 마사히로政昭 | 마사히로政昭 | 마사히로政昭 | 마사히로政昭 | 마사히로政昭 | 마사히로政昭 |       |
|       | 하루토라玄寅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아와번    |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오카야마번 |

출처: 『備前池田家系譜』, 『岡山市史 (第三卷近世, 池田家本支略系)』pp.1939-2041, 『池田老臣累記』, 『備前家老略伝』

주1: 이케다 쓰네오키는 4남 나가마사를 가로 가타기리(片桐)가에 양자로, 테루마사는 나가사다(조카, 나가요시 차남, 후에 동생 나가마사가 형 나가사다의 양자로 되어 나가마사파가 됨)을 가로 모리데라(森寺)가에 데릴사위로 보내어 이케다가로 하였다. 전자를 가타기리 이케다가(B)라 칭하고 후자를 다케베(建部)이케다가(A)로 칭함.

그런데 이케다가에서 편찬한 『池田家本支略系』중에는 『寛政重修諸家譜』에 없는 이성의 하타모토(시게토시[重利])파가 있다. 그 경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게토시파(流)의 조상은 시모즈마(下間)성으로, 전국시대 말기 시모즈마라이류(下間頼龍)가 이케다 쓰네오키의 양녀 (실제로는 오다노부나가의 동생 노부토키[信時]의 딸) 와 결혼하여, 이케다가와 인척관계가 맺어졌다. 라이류의 아들 시게토시는 테루마사를 모시면서 이케다 성으로 칭하였다. 시게토시는 이케다가와의 직접적인 혈연적 관계는 없지만, 쓰네오키의 양녀이면서 테루마사의 사돈 조카로 이치몬에 속하게 된 것이다(大森映子 1999, 118-119).<sup>17)</sup> 이는 도조쿠 등에서 가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혈연인 분가 내지는 봉공인 등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당시 엄격한 혹은 절대적인 부계적 출계로 계승되지 않고, 가끔 모계와의 관계로 계승되는 것도 있다. 이는 엄격한 부계적 출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치몬 사이는 관혼상제와 같은 의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가독 상속 및 양자 상속(및 교환) 등 중요한 사항을 의논하고 협의한다.<sup>18)</sup>

우선 오카야마번과 돗토리번의 관계를 파악한다. 전술한 것처럼, 테루마사는 적자 토시타카에게 오카야마번을 상속케 하고, 타다쓰구는 처음에 막부로부터 영지를 받고, 후에 이복형 토시타카로부터 10만석을 분여(分與)받았다. 이런 이유로 다른 번과 달리 본분가 관계의 종속

17) “양녀를 들이는 목적은 데릴사위를 들이거나 (정략적으로) 다른 집에 시집보내기 위해서이다. 양녀는 양가의 실자들과 형제자매가 되고, 그 순위는 양부가 임의로 결정한다. 그리고 양녀는 형제자매와 결혼하지 못한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여동생, 조카, 손녀 및 자식이 사망한 후 그 며느리를 양녀로 하는 것이 적지 않다(中田薫 1926, 443-447).” 그리고 시게토시는 1만석의 다이묘로 되었지만, 4대 번주 때 후계자가 없어 가이에키 되었다. 그러나 번주의 동생 슈교(重教)가 1만석 중 3천석이 상속이 허락되어 하타모토로 존속되었다.

18) 이치몬(일족)사이에 사촌혼을 포함한 근친혼도 행해진다. 예를 들면, 가모카타 2대 번주 마사요리(政倚)의 딸은 이쿠사카번 2대 번주 마사하루(政晴)와 결혼하였다. 이런 예는 다수 보인다.

성은 약한 편이다. 그러나 양 번의 계보의식 및 의례에서 본분이 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그 예로, 오카야마번 2대 번주 쓰나마사(綱政)는 분가인 돗토리번 4대 번주 쓰나쿄(綱清)가 먼저 종사위하시중(從四位下侍從)에서 소장(少將)의 관위로 승진하자 본가의 체면이 손상되었다. 그래서 쓰나마사는 5대 쇼군인 도쿠가와 쓰나요시(德川綱吉)의 측근(側用人)에게 사전에 청원서를 보여 주면서 지도(부탁)을 하였다(즉 네마와시[根回]). 그 청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세이’ 돗토리번 번주는 쇼군의 외척으로 많은 보살핌을 받았지만...가계로 말하면 서자가(분가-필자 주)인데...자기보다 먼저 소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청킨대 소료카(總領家, 분가-필자주)와 서자의 계보를 세울 수 있도록, 승진을 바라웁니다(藤田覺 2012, 118에서 재인용).”

이를 보면, 본분이 관계를 ‘도세이’로 호칭하고, 본가는 오카야마번이고 돗토리번을 서자가(분가)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나카타 가오루의 논의와 그림1을 결합하여 본분이 관계와 용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분가(c)에 의해서 다시 분가(f 혹은 g)를 창설한 경우, 이 두 가는 본분(말[末])의 관계가 생기지만, 신설된 분가(f)는 본가(a)로 부터 분(말)이라고 불리게 되고(서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손분가라고 칭함), 이에 비해 신설된 분가(f)는 본가(a)라 칭하지 않고 이에모토(家元)<sup>19)</sup>라고 칭한다. 동일 분가에서 분리된 각 분(말)가(b,c,d,e,f,g)는 서로 ‘도세이’이라 하고, 두 개의 분가중 하나(b 혹은 c)는, 다른 가의 분(말)가(d,e,f,g)를 칭할 때 ‘도세이’이라 한다. 반대로 신설된 분가(f)는 자기의 본가(c)를 본가의 ‘도세이’이라 한다(中田薰 1926, 574- 575).<sup>20)</sup> 여기

19) 여기서는 종가(宗家)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흔히들 일본사회는 이에모토의 원리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에모토란 유사 가(친)족제도(예를 들면, 예술분야에서 스승과 제자들로 이루어진 집단)라고 할 수 있다.

20) ‘도세이’라는 용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확대된다. 동성은 (광의의)신루이 중

서 호칭으로 ‘도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도세이’에는 계보의식과 서열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돗토리번(b)의 시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외손자라는 특수한 신분이어서 가격(가격)이 오카야마번을 능가하고, 또한 석고도 32만 5천 석이고, 오카야마와 돗토리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별도의 국(國)을 통치하고 있다. 따라서 돗토리 번은 오카야마번에 의지할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sup>21)</sup> 더구나 세대가 지남에 따라 ‘도세이’ 혹은 이치몬의식이 희박해져 가고, 오히려 위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경쟁의식이 존재한다.

이에 비해 오카야마번과 (직접 분가를 창출한)가모카타번·이쿠사카번의 관계는 위와는 다르다. 본가에서 분지를 하였기 때문에 명확한 계보의식이 존재하고, 지리적 인접성을 갖고, 분가는 본가에 경제적 의존을 하였다. 특히 분가는 재정적으로 독립채산을 채택하지 않고 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만약 본가의 재정적인 원조가 없으면 분가를 유지 존속할 수 없다. 따라서 분가는 재정적 원조를 해주는 대신에 본가에 대해 재정적 지도와 감독을 하였다(谷口澄夫 1995, 154-156). 또한 분가는 분가의 가독상속인을 결정할 때 합의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본가가 주도한다. 그리고 본가에 가독 후계자가 없을 경우 이들 분가에서 양자를 들이고, 분가는 본가에 각종 봉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분가는 분가를 창출한 본가에 강한 종속성을 띠고 있다.

본분가의 ‘도세이’ 및 본분가를 포함한 부계혈족인 이치몬의 구조와 원리는 서민의 이에 및 동족과 유사성을 지닌 면도 존재한다. 계보적 우월성과 경제적 조건 및 거주 조건이 이 단체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

부계혈족을 말하고, 또한 동일의 묘지를 사용하는 가이다. 동성의 법률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양자 청원서를 제출할 때, 동성의 중요한 죄, 즉 연좌될 때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뿐이다. 그 외의 실질적 기능은 없다(中田薰 1926, 573-575).

21) 분가가 본가에 의존할 필요성이 없거나, 거주지 인접성이 없을 때(특히 후다이 다이묘의 분가는 영지가 분산) 분가는 독자의 길을 걷는다(野口朋隆, 2011).

요소가 되고, 본분가간에 중층적인 서열구조가 존재하고, 전체보다는 두 가 사이의 계보관계가 중시되고, 분가를 낸 가는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고(예를 들면, C), 경제적 원조와 의존의 관계가 있다. 그러나 무가는 가업 및 생활공동체(경영체)라기 보다는 혈통을 기초로 하고 있으면서 법 혹은 신분에 따른 규정이나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가독상속이고 이와 연계된 양자제도이다.

### Ⅲ. 가독상속

막부법에서는 부의 은거에 따른 상속을 가독상속이라 하고 부의 사망에 따른 상속을 아토메(跡目, 1만석 이상은 유령[遺領]상속이라고 한다(中田薰 1926, 574-575).<sup>22)</sup> 오카야마번은 막부법의 근거로 상속의 원인에 따라 가독·아토메·이에즈기(家續)·묘세키(名跡)상속으로 구분한다.<sup>23)</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구용어로서 가독을 많이 사용한다. 일본에서 종종 가독의 개념을 메이지 민법의 호주권과 관련하여 연상하는데, 여기서 가독상속이란 호주 지위(통솔자) 계승하는 것과 가산의 상

22) 은거는 형벌로서의 강제은거와 본인이 청원하는 출원은거가 있다. 은거 청원의 사유로서는 노환과 병환이다(中田薰 1926, 528). 은거허가의 연령제한은 막부와 각 번이 다르다. 우선 막부에서는 1716-1736년 시기에서는 40세 이상인 자로 하고, 1804-1830년 시기에는 불치의 병이 있더라도 사자(嗣子)가 17세이고 쇼군에게 알현을 하지 않은 경우 은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1862년까지는 70세 이상인 자로 하고, 1862년에서 1867년까지는 50세로 완화하였다(服藤弘司 1982, 233; 福田千鶴 1998, 16). 근세전기 은거연령이 20세부터 90세까지 폭이 있지만, 평균연령은 60세이다(福田千鶴 1998, 16). 오카야마번에서 은거는 30세부터 63세까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은거의 표면적 이유는 병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정치적 문제, 부자간의 불화, 오시코미(押込, 번주에게 감금과 은거 시키는 것)도 있다.

23) 이에즈기는 적자가 별도로 출사해 격식과 봉록이 부친 보다 위에 있을 때, 부의 사망에 의해 상속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부친의 봉록은 몰수되고 적자의 봉록은 그대로 상속된다. 묘세키는 주군이 단절된 가에 대해 안타까워해, 일족 또는 이성(異姓)자를 상속인으로 선정하여 은혜적으로 가를 재흥시키는 것을 말한다(谷口澄夫 1995, 79).

속을 말한다(川島武宜 2000, 171-172). 그러나 “도쿠가와 막부의 봉건 법에서 가독 상속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독의 지위 혹은 권리의 상속이 아니고, 또한 가명의 계승도 아니다. 가명과 결합한 세봉세록(世封世祿)이다. 여기서 세록의 정지가 가명의 단절이고, 세록의 재급이 가명의 재흥이다. 따라서 가독이라는 것은 세봉세록이고, 가명은 이에 부가 되는 것에 불과하다(中田薰 1926, 492-493).” 이와 같이 무가에서의 가독은 봉록을 의미한다. 서민의 가에서의 가독은 가산을 의미한다(石井良助 1980, 80). 일본 학계에서 가독상속은 봉록을 말하는데 그 구체적 대상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달리한다. 이시이 료스케는 나카타 가오루의 봉록상속의 설을 계승하고, 봉록에 부가해서 가명상속, 제사상속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것들의 기초는 가업상속(관념)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봉록이 상속의 중요한 대상이라고 해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봉공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근원은 봉공, 즉 가업(출사)에 있다(石井良助 1980, 77).” 즉 무가의 가독 상속은 주군에 대한 봉공, 즉 가업의 상속이고, 이 가업·봉공이 있어야 비로소 봉록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하라후지 히로시(服藤弘司)는 위에서 말한 가업(봉공)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고 상속의 효과 내지 의무에 불과하다. 주군과 가신이 어은과 봉공이라는 봉건적 관계에서, 봉공은 봉건적 관계를 발생,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지만, 봉공은 상속자의 권리가 아니고 의무로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는 가독상속을 “선조의 훈공에 기초를 둔 가록의 상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무사계급은 동일한 가업에 종사하더라도 상속자격을 갖는 후다이 가신과 상속자격을 갖지 않은 신참자는 일대한(一代限, 자손에게 가독을 상속시킬 수 없는 것을 말함)으로 엄격하게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가업을 계승했더라도 상속자격이 부여되지 않은 자는 단순한 봉공이자 출사에 지나지 않고, 상속의 대상이 아니었다. 상속은 선조의 훈공이 있는 후다이 가신

에게만 갖는 특권이다(服藤弘司 1982, 540). 다시 말하면, 후다이에게는 조상의 훈공이 증시된 반면에 신참자에게는 봉공이 증시된 것을 의미한다.

오카야마번을 보면 하라후지 히로시의 설이 더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오카야마번은 하리마 시대(테루마사, 토시타카 시대)이전에 출사한 가신을 후다이라 하고, 이나바시대(미쓰나리 시대) 이후에 출사한 가신을 신참자로 삼았다(谷口澄夫 1995 57).

이 후다이 중에서도 군사적 조직 편성을 기준(반가타[番方]이라고 함)으로 가격(격제[格制]라고도 함)이 나누어지고 또한 이 가격에 따라 봉록과 역직(役職)을 나누었다. 오카야마번의 가격은 다음과 같다. 가로-반가시라(番頭)-모노가시라(物頭)-(요리아이[寄合])-킨쥬가시라분(近習頭分)-구미가시라(組頭)-(구미하즈[組外])-헤이시(平士)-(츄고슈[中小性])-시뱃포(土鐵砲)-카치(徒)-케이하이(輕輩)-아시가루(足輕)이다. 이중 헤이시(혹은 츄고슈) 이상이 사무라이(사분[士分])이고, 시뱃포와 카치는 카치격(준사분[準士分])이고, 그 이하는 잡병이다. 상급가신(킨쥬가시라분 이상) 중 66%가 후다이이다(谷口澄夫 1995 58). 후다이와 신참자는 상속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다. 후다이 특히 상급가신은 ‘히사시키모노(家久者, 즉 오래된 가)’ 혹은 ‘유서(由緒, 역사라는 의미인데 조상의 주군을 모신 시기와 훈공을 말함)’가 있다라고 해서 조상의 석고(봉록)를 거의 상속을 받지만, 신참자는 대개 일대한이다. 다니구찌 스미오(谷口澄夫)는 1700년의 『아토메 첩의 장부(跡目御僉議帳)』에서 37건 아토메 상속의 조사에 의하면, 첫째, 후다이 상속인(아토메)은 유소자든 양자든 관계없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봉록을 그대로 계승되고, 신참의 경우는 상속인 특히 양자라면 상당히 감록(봉)되고, 둘째, 신참이라도 부친이 근무태도가 좋으면 그대로 계승되었다(谷口澄夫 1995, 182). 이점에서 보면, 후다이는 조상의 훈공에 따른 가독

에 대한 강한 상속권을 갖는 반면에, 신참은 봉공이 중시되는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가로들은 모두 유소자든 양자든 그대로 가독 계승을 하였다.

그리고 종전의 연구에서 봉공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여 봉공(군역) 능력이 없는 유소자(幼少者)에게 감지제(減知制)를 취한다고 강조하였다(中田薰 1926, 497- 49). 여기서 성인의 기준과 절차는, 일반적으로 원복(元服, 성인식)하고 쇼군에게 알현을 마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대개 17세 전후를 성인으로 본다. 17세라는 연령제한에 대해 오오모리 에이코가 연구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쿠사카번 4대 번주 마사스케(政彌)는 나가지로(永次郎, 즉 마사후사)를 가독상속인으로 하는 청원을 막부에게 제출하고, 당일 사망하였다. 그러나 나가지로는 2세(만 1세)에 가독 상속을 했으나 3세에 사망하였다. 이케다가에서는 막부에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그동안 오카야마번 5대 번주 하루마사(治政)의 서출 장남인 6세 뎃쓰사부로우(鐵三郎, 후에 이쿠사카번 5대 번주 마사유키[政恭])로 바뀌치기를 하였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번주 하루마사는 이때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후에 서출 출신인 호리나오후루(堀直濶)가 출생), 적출 아들 2명은 막부에 이미 신고한 반면에, 서출인 뎃쓰사부로우는 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 오카야마에 있던 뎃쓰사부로우를 몰래 에도 번저로 불러들이어 바뀌치기를 하였다. 즉 코헨나이분(公辺内分, 막부나 주군에 대해 보고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신고를 하거나, 일을 몰래 처리한다는 의미)을 한 것이다(大森映子 2010, 38a). 오오모리 에이코는 코헨나이분을 행하는 이유를 막부법(御大法)을 들고 있다. 이 법의 상속원칙은 유소자라도 가독 상속은 되지만, 만약 17세(혹은 쇼군 알현) 전에 사망하면 (그 다음에)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쇼군에게 봉공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위와 같은 이유

로 다이묘가의 해체는 없었다. 이는 본질적 원인이 (다이묘가 일찍 사망한 경우 양자를 들일 수 없기 때문에)무사(無嗣)이고 유소는 부차적인 요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福田千鶴 1998, 70). 조상의 훈공의 이유로 특례, 혹은 목인으로 가의 존속을 허락하였다(福田千鶴 1998, 86).<sup>24)</sup> 오카야마번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대 번주 미쓰마사는 유소자(8세)라는 이유로 감봉과 전봉이 되었다. 이는 유소자라는 것 보다 도쿠가와 막부 초기 정권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군사 요충지를 유소자에게 맡기기에 곤란했기 때문이다. 3대 번주 쓰구마사(繼政)는 13세, 5대 번주 하루마사(治政)는 16세에 가독을 계승하였다. 가모카타번에서는 7대 번주 마사토모(政共) 14세, 8대 번주 마사요시(政善) 14세, 10대 번주 마스야스(政保)도 그대로 가독을 계승하였다. 이쿠사카번에서는 2대 번주 마사하루(政晴) 10세, 3대 번주 마사카즈(政員) 12세, 5대 번주 마사유키(政恭) 4세, 8대 번주 마사노리(政礼)도 6세에 그대로 가독을 상속했다.

일반 가신들은 행한 코헨나이분과 같은 것은 연령사기이다. 오카야마번에서도 막부와 같이 상속의 원칙을 주군에게 알현을 끝낸 적자로 규정하였다(谷口澄夫 1995, 58). 상급가신은 연령사기와 같은 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오카야마번은 6가(여기에 이케다 분파인 3가가 있음)가 고정적으로 가로직을 계승하였다. 예를 들면, 가로 이키(伊木)가 13대 당주 타다마사(忠正)는 4세에 가독상속하고 16세에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 상속인 타다즈미(忠澄)는 16세에 가독 상속을 하였다.<sup>25)</sup> 이런 점에서 상속에서 조상의 훈공과 혈통이 중시되고, 정당한 혈통에게는 상속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반가시라급의 연령제한

24) 오오모리 에이코도 이런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비록 위의 법이 형식적이라도 다이묘가의 존속에 관련된 이상, 될 수 있는 한 법을 저촉하지 않으려고 코헨나이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大森映子 2014).

25) 가로 이케다 나가야키(長明)는 2세에 가독을 상속받았다. 이러한 예는 부지기수이다.

및 절가(絶家)가 된 코우노(河野)가의 사례를 살펴본다.

“하야형부(河野刑部)는 (중략) 여러 군공을 세워 2천석을 배령하고 그 아들 하야형부(河野刑部)도 겐나(元和)1년에 아토시키키(跡赤, 즉 아토메, 필자 주)로 지행 2천석을 그대로(無相違) 상속 받았으며, 이나바(稻葉)로 개성(改姓)하였다. (중략) 칸에이(寬永)19년에 기사장(騎士將, 시대장[侍大將]이라고도 하고 반가시라라고도 함, 필자 주)가 되고 쇼호(正保) 4년에 사망하였다. 그의 아들 사랑우위문(四郎右衛門)은 동년 가독을 그대로(無相違)로 상속받았다. 칸분(寬文) 12년에 반가시라가 되었다. 그 아들 사랑우위문정승(四郎右衛門正勝, 초명 조오랑[助五郎]), 그의 아들 시병정장(矢柄正長)은 5세에 가독을 이어 5백석이 줄어든 1천 5백석을 상속했다. 칸엔(寬延)2년 17세가 되어 이세키(遺跡, 즉 아토메, 필자 주)를 상속하고 요리아이(壽合)가 되었고, 호레키(宝曆) 4년에 기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메이와(明和) 8년에 정신이상(狂氣)로 인해, 번주의 명령에 의해 헤키 사에문(日置左衛門, 가로, 필자 주)이 그를 아즈카(預, 미결 구금상태, 필자 주)하였다. 그는 유폐장소(幽堂)에서 보내다 사망하였다. 이 때 39세이었다. 코우노이나바(河野稻葉)가는 일단 단절되었다. 그 가의 적자 기칠랑(記七郎, 초명 소선[小膳])은 번주(하루마사, 필자 주)의 명령에 의해 코우노이나바 가를 재흥하게 하여 그에게 50인 후찌마이(扶持米, 1인 후찌마이는 1일 현미 다섯 홉으로 연간 1.8석, 50인이므로 연간 약 90-100석, 필자 주)의 구미하즈(組外)로 배속케 하였다. 그러나 그의 후손 시병정교정임(矢柄政喬正賃) (중략) 결국 가가 단절되었다고 전이정훈(伝異庭訓)에 기록되어 있다(『諸家中知行留』).”

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상급 후다이에게 친자(혹은 정당한 혈통)가 있으면 그대로 상속되었고, (위에서 본 것처럼 연령사기 같은 것이 없이)유소자가 상속한 경우 약간의 봉록이 삭감되지만 성인(17세)이 되면 피상속자의 석고가 회복되었다. 설령 범죄가 있어 가가 단절되더라도,<sup>26)</sup> 유서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세록을 주어 가명을 재흥(묘세키 상

속)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상속에서 상급 가신들에게는 봉공보다는 유서와 혈통이 중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 근세 중기 이후에는 오카야마번에서는 재정적자를 벗어나기 위하여 가신들의 봉록삭감정책을 취하였다(谷口澄夫 1995, 113).<sup>27)</sup> 이는 세록제가 유명무실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카치격은 상속자격이 없는 일대한이었으나 이 당시에는 상속이 되었다.<sup>28)</sup> 상속에서 봉공의 개념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인 선정의 기준, 특히 양자 상속 규정을 무시하고 지참금(혹은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혈통을 무시한 상속인을 선정하였다.

가독 상속법은 혈통의 자연적 순위가 중시되었다. 당주가 임의로 가독 상속인을 선정 혹은 교체를 할 수 없다. 적자의 선정 또는 교체의 법률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이상, 혈통의 자연적 순위를 따라야 한다. 혈통의 자연적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막부법에서 적자의 신분을 취득할 실자는 반드시 출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나카타 가오루는 혈통의 자연적 순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 순위는 ‘법정적자’, 출생신고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적자인 신분을 취득한 자, 우선 적출 장남이고, 적장자가 사망하면 차남이하가 여기에 해당된다. 둘째 순위는 ‘신고 출생 적자’, 적출 장남이 태어나기 전에 신고한 첩의 아들, 즉 서자이다. 셋째 순위는 ‘청원적자’, 당주(즉 피상속인)의 청원에 의해 적자 신분을 얻는 것이다. 적자가 사망 혹은 폐적인 된 경우, 피상속인은 적손(적손승조고(嫡孫承祖顧)라고 함), 차남 이하의 아들(즉 전 적자의 동생) 및 방계친 순서로 적자를 선정해서

26) 『諸家中知行留』사료에서 가의 단절된 이유를 (위의 가뿐만 아니고)광기(狂氣)라는 말이 종종 나오는데, 이는 중대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7) 오카야마번의 연공율이 38%→30.5%→30%→20%→20%이하로 점점 체감되었다(谷口澄夫 1995, 113).

28) 『備前藩士帳(1711-1716년)』에 카치격도 기재되었다. 이는 상속 허락을 의미한다.

신고한다.

또한 당주는 적자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폐적할 수 있다. 첫째, 적자 또는 적자 순위자가 병신 혹은 허약해서 봉공을 할 수 없는 경우, 폐적 청원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둘째,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경우이다. 셋째, “가업을 이을 재능과 역량이 없음”인데, 주로 유학자와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中田薰 1926, 503-519). 따라서 가업에 종사하는 유학자와 의사 등이 아닌 일반 무사와 관련된 것은 첫째와 둘째이다. 이 중 첫째가 중요한데, 다나카나오루는 “현실적으로 법정상속인 적자조차도 병신 혹은 허약으로, 장래 가독을 상속하더라도 봉공근무가 없는 자는 폐적이 허가된다(中田薰 1926, 497-498).”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하라후지 히로시는 폐적의 본질에 대해 다른 관점을 피력하고 있다. 폐적은 장래 성인이라도 전혀 봉공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것이고, 미성년자가 충분한 봉공능력을 갖지 않은 것에 대해 곧바로 상속자격결여로 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장래에 성인이 되어 봉공이 가능한 조짐(예상)만 있다면 결코 상속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 위의 오카야마번에서와 같이, 친자, 손자 상속에서 위와 같은 미성년이라는 조건으로 상속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던 영주는 한 사람도 없다(服藤弘司 1982, 271).

여기서 같은 혈통이면서 서자는 차별을 받았다. 우선, 이쿠사카번 2대 번주 마사하루의 서출장남 우도노마사나가(鵜殿政長)와 전술한 오카야마번 5대 번주 하루마사의 장남 마사유키(후에 이쿠사카번 5대 번주)는 막부에 ‘신고 출생 적자’로 되었지만, 적출 장남이 출생되자 차남으로 바뀌었다.<sup>29)</sup> 둘째, 출생신고(혹은 조부토도케[丈夫届])가 이루어진 서자는 피상속인이 사망 한 경우에, (적자가 없는 경우)적자와 같이

29) 우도노 가의 족보에서 우도나 마사나가가 마사하루의 장남이 아니고 차남으로 되었다 <http://www.geocities.jp/keizujp2011/udono.html>(2018.5.8).

그 가독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준법정 적자’이라고 칭한다(中田薰 1926, 511). 셋째, 실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전술한 것처럼, 당주는 막부에 출생신고를 할 의무는 없었다. 특히 서자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자 선정이 되지 못하고, 다이묘가 혹은 하타모토 가의 양자가 될 수 없다. 보통 실가 보다 격이 낮은(다이묘거나 하타모토가가 아닌)가신의 가의 양자가 되었다. 넷째, 출생신고는 꼭 출생 때 신고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죠부토도케(“출생할 때 허약했지만, 그 후 장부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실자로 신고한다”라는 문구를 기입)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신고로 간주된다(中田薰 1926, 540-541). 예를 들면, 이쿠사카번 4대 번주 마사스케는 서자인 조카(14세) 토요노스케[豊之助]를 적자로 신고하였다(大森映子 2010a, 56).<sup>30)</sup>

이와 같이 가독상속법은 혈통의 자연적 순위를 중시하고 또한 혈통 중 모친의 신분, 즉 서자는 차별받고, 죠부토도케와 같이 근세 중기 이후는(엄격하게 통제된)전기보다 상속에 대한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다.

## IV. 양자제도

### 1. 양자제도의 분류와 양자 선정 및 절차

근세 일본에서 이성양자는 보편적이다.<sup>31)</sup> 오카야번의 10명의 번주 중에서 4명이 양자인데, 이중 3명(7대 나리토시[斉敏], 8대 요시마사

30) 그러나 토요노스케는 16세에 사망한다. 그래서 마사스케는 자신의 아들 나가지로를 적자로 선정하였다(위의 코헨나이분의 사례를 참조하라)

31) 예를 들면, 에도 중기 가네자와번에서 50% 이상이 양자이고 이중 말기양자가 1/3을 점한다(服藤弘司 1982, 342). 키오스에번에서는 양자가 39.7%, 이중 이성양자가 34.2%를 점한다(磯田道史 2003, 75).

[慶政], 9대 모치마사[茂政])이 데릴사위(婿養子)이다. 이소다 미찌후미(磯田道史)는 오카야마 가신단에서 대략 1/3이 데릴사위라고 분석한 것과 비슷하다(磯田道史 2003, 75).

나카타 가오루는 양자를 통례양자(通例養子), 데릴사위, 순양자(順養子), 말기양자(末期養子), 가양자(假養子), 당분양자(當分養子), 심당양자(心當養子)로 분류한다(中田薰 1926, 376). 통례양자란 자식이나 동생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계혈연, 즉 동성에서 선정한다. 그러나 이것도 없으면 이성을 들이는데, 이 때 신루이가키(親類書)에 동성 중에 마땅한 양자가 없다는 것을 기입한다. 순양자란, 당주인 형이 친동생을 양자로 삼는 경우, 양자가 양자로 들어간 집의 동생을 양자로 삼는 경우이다. 또한 전술한 마사스케와 토요노스케와 같이, 당주가 아들을 남겨 둔 채 일찍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당주를 대신하여 우선 가독상속을 하고 (설령 자기의 실자가 있더라도) 혈통 상 원래 가를 계승할 자(사망한 당주의 아들)를 자기 양자로 삼아 가독 상속을 시키는 것이다. 흔히 중계상속(양자)이라고 한다. 만약 혈통 상 계승할 자를 체쳐두고 자기 실자에게 상속시키는 것을 어가횡령(御家橫領)이라고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가소동(御家騷動)이 일어난다. 말기양자란, 임종 때 급하게 양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급양자(急養子)라고도 한다. 원래 말기양자는 금지되었는데, 1651년부터 말기양자가 허락되었다. 말기양자는 다른 양자에 비해 비교적 엄격한 조건이 부여된다. 전술한 것처럼, 말기양자의 연령조건을 17세에서 50세까지로 제한하고, 한모토미토도케(判元見届)라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모토미토도케라는 것은, 막부에서 오오메즈케(大目付, 주로 감찰 및 재판을 담당하는 직책)와 막부의 의사를 파견하여 피상속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청원 내용이 본인의 의지인지 여부를 확인한다.<sup>32)</sup> 가양자란, 아직

32) 그리고 설령 동성이라도 말기양자의 선정과 절차는 비교적 다른 것에 비해 복잡하다. 이에 대해 오오모리 에이코의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서술한다. 이쿠사카번 3대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참근교대로 번으로 갈 때, 혹은 막부의 공무로 출장 갈 때, 만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막부에 임시로 (의무적으로) 양자 청원을 하는 것이다. 만약 에도 부재 시 사망한 경우, 이 가양자가 상속을 받는다. 반대로 만약 무사히 에도로 돌아올 경우, 청원은 반환되고 동시에 실효된다. 만약 실자가 태어나면 가양자는 후계자격을 상실한다. 그러나 비록 일시적인 가양자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독을 계승할 가능성도 있어 자의적 지명은 허락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혈연적 친소의 중시가 요구된다. 특히 말기양자 상속에서는 가양자 지명의 실적이 큰 의미를 지녀 최종적으로 가독을 상속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비해 심당양자는 40세 이상인 자가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양자를 미리 출원해 둔 양자이다. 따라서 심당양자는 광의의 가양자라고 할 수 있다(中田薰 1926, 418-441).

---

번주 마사카즈는 1월 25일 위독(실제로는 사망)한 상태에 있었다. 이날 일문이 오카야마 에도 번저에 모여 마사스케를 말기양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참가하지 못한 일문에게 당일 날 서찰 혹은 사자를 파견하여 사전보고 및 합의 확인을 행하였다. 1월 27일에 말기양자 청원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한모토미토도케의 절차가 시작되었다. 오오메츠케와 막부의사 4명 및 일문 등이 참가하고 마사카즈의 병상에서 청원서를 작성하였다. 말기양자 청원서의 내용은, 첫째, 병상보고이다. 병의 경과와 막부의사의 진단과 투약을 했지만 병세 호전이 없다는 것을 기록한다. 둘째, 상속인이 없는 것을 전제로, 후보자로 동생 마사스케의 명단을 올리고, 이전 가양자로 마사스케를 지명했다는 것을 명기하였다. 만일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마사스케가 상속이 되도록 허락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기양자 첨부서류로서, (1) 용체서(容體書), (2)혈연 관계자를 기입한 가보(續書), (3)진단 및 투약을 행한 의사 명의의 서류, (4)서류작성에 입회한 오쿠(奥)의사(막부의 어의)의 서류, (5)입회한 친족 내지는 일족의 명단을 기입한 서류, (6)현재 임신한 부인이 없다는 각서이다. 여기서 (2),(5)에서 다이묘와 하타모토의 신분인지만 기입하고, 가신은 기입하지 않는다. 막부에 대해서는 가신의 가신, 즉 배신이기 때문이다. 당일 일족의 하타모토 이케다 마사아키라(政郎)가 막부 로쥬(老中, 막부 최고 정무기관)에게 제출하고, 1월 29일에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사스케는 말기양자로 인정되어 3월 21일 정식으로 가독 상속을 했다. 그런데 실제 사망일은 1월 25일, 즉 사후에 청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원래 말기양자 상속 절차는 생전에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족의 합의가 있고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면 막부는 이를 묵인하였다(大森映子 2010a, 48-53).

통례양자와 순양자 등은 혈통을 중시하는 상속원칙에 맞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가양자와 말기양자, 특히 말기양자는 일반적으로 이성양자가 적지 않다. 왜냐하면, 말기양자는 실자의 탄생 내지는 성장을 기대하거나, 서출의 자식이어서 신고를 하지 안했거나, 가까운 동성이 없거나, 설령 동성중에 양자로 될 사람이 있어도 마음이 안 들거나, 지참금 양자를 들이려고 해서, 상속인을 선정하지 않고 사망 전까지 보류하는 경우가 많아 이성양자를 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혈통의 원칙에 위배된 말기양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상속 허가는 주군의 은혜에 기대할 뿐이고, 허가가 되면 이는 봉록의 재급에 속하는 것이다(服藤弘司 1982, 45).

전술한 것처럼, 오카야마번은 7대 번주부터 9대 번주까지 데릴사위이다. 7대 번주 나리토시는 가양자로 요시마사를 지정하였다. 나리토시는 작은 할아버지 해당하는 나카쯔번(中津藩) 번주 오쿠다이 마사타카(奥平昌高)의 10남인 요시마사를 양자로 들이었다. 나리토시는 촌수로는 요시마사의 재종 조카에 해당되지만 나이는 12살 위이다. 그런데 나리토시와는 달리 요시마사는 이케다가와의 혈연관계가 없기 때문에, 가모카타번 8대 번주 마사요시의 딸을 양녀로 하고 요시마사를 데릴사위로 하였다. 9대 번주 모찌마사는 원래는 오시(忍)번 번주 마즈다이라 타다쿠니(松平忠国)의 양자였으나, 안정대옥(安政大獄)에 의해 실부 미토번(水戸藩) 번주 도쿠가와 나리아키(徳川齊昭)가 처벌 받아, 양부는 막부의 눈치를 보고 모찌마사를 폐적하였다. 모찌마사는 미토번으로 복적(復籍)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요시마사의 딸과 결혼하여 데릴사위가 되었다. 10대 번주는 원래 가모카타 마사요시의 말기양자로 9대 번주이었으나 종가에 상속인이 없어 오카야마번 가독을 계승하였다.

가모카타번에서는 3대 번주 마사미찌(政方)가 동성양자이고, 4대 번주 마사카와(政香)는 동생(5대 번주 마사나오[政直])을 양자로 선정하여 가독을 상속시켰다. 7대 번주 마사토모(政共)는 19세에 사망하였다. 생전에 동복 동생인 진지로(甚次郎)을 가양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마사토모가 급사하자 진지로가 가독상속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병약해서 가독상속에 동반한 여러 가지 일을 하기에 무리가 있었다. 그래서 마사요시 보다 7개월 후에 태어난 서출 동생 토라요시(虎吉)를 진지로 마사히로(甚次郎政広, 8대번주 마사요시)로 개명하고 바꿔치기를 하였다.<sup>33)</sup> 5대와 8대번주는 순양자에 해당된다. 8대 번주인 마사요시는 38세에 사망했으나, 6개월 간 막부에 사망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가독 상속 절차를 행하였다. 마사요시는 적자 마사키(政樹)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막부에 적자가 병약하다는 이유로 폐적 청원을 하고, 급양자로 아키마사(章政, 9대 번주)에게 가독을 상속시켰다(大森映子 2010b).

이쿠사카번에서는 초대 테루토시는 재종조카를 양자로 하고(2대 번주), 3대 번주 마사카즈는 동생 마사스케(4대 번주)를 가양자로 지정하고, 후에 말기양자로 정했다. 4대 번주는 순양자에 해당되기도 한다. 6대 번주 마사노리(政範)는 딸만 있어 일족인 마사카즈(政和, 7대 번주)를 데릴사위로 들이었다.

## 2. 양자제도의 특징

위에서 본 양자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혈통 중시이다. 전술한 것처럼, 7대 번주 나리토시가 요시마사에게 혈연적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 가모카타번 8대 번주 마사요시의 딸을 양녀로 삼아 결혼시켰다. 그리고 타가의 양자로 간 먼 조상 사가라 나가히로(相良長寛,

33) <https://www.weblio.jp/wkpja/content/池田政善>

오카야마 4대 번주 무네마사(宗政)의 차남)의 증손을 찾아 양자(10대 번주 아키마사)로 한 점 등은 혈통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혈통은 정통성의 근간이다. 오카야마 번에서 8대 요시마사는 가신들에 의해서 강제로 은거되고, 9대 모찌마사는 가신들의 공갈 협박 등 퇴진 압력에 의해 은거를 행하였다. 가신들이 내세운 것은 “양가(養家) 전통 규칙을 준수하시오”이다(磯田道史 2010, 64). 물론 이성양자가 번정의 상황도 모르고 정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혈통적 정당성이 결여된 점도 크다.<sup>34)</sup>

둘째, 혈통 속에서도 신분, 특히 적서차별이 존재한다. 이는 적자순위에서 본 것처럼 법률로도 규정되었다. 그리고 양카이(서자도 포함)는 대개 동일한 가격 혹은 양가가 실가 보다 낮은 가격의 집에 양자로 간다. 가모카타번에서 타가의 양자가 된 자가 7명인데, 이 중 4명(막부에 신고된 실자)이 실가보다 한 단계 낮은 하타모토 가의 양자로 되고, 나머지 3명은 하타모토 가 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sup>35)</sup> 그리고 이쿠사카번에서는 5명 중 하타모토 가 2명, 가로 가 1명이고, 그 나머지 2명은 위의 가 보다 더 낮은 가격이다. 이 두 번에서는 모두 격이 하강이동이지만, 상승(가모카타 3대 번주 마사미찌와 이쿠사카번 7대 번주 마사카즈의 실가는 하타모토임)도 있다. 대개 상하 1단계의 차이이고, 2단계 상승은 극히 드물고(이쿠사카번 2대 번주 마사하루의 실가는 반가시라

34) 이와 같은 예는 아와번(阿波藩, 25만 7천석)에서도 볼 있다. 아와번 10대 번주 하치스카 시게요시(蜂須賀重喜)가 개혁을 추진하자, 가로 야마다 오리베(山田織部)는 번주에게 반대 상소문(諫書)을 올렸다.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령 실자라도 가를 계승하고 3년은 부친의 도(道)를 고치지 않는 것이 도리이다. 하물며 번주는 양자의 몸으로 한층 더 공손하고 겸손해야한다(笠谷和比古 2006, 32에서 재인용).”

35) 일본에서 편의상 1만석 이상을 다이묘라 하고, 이 기준으로 다이묘와 하타모토로 분류한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면, 이키가는 3만 3천석인데 가로이다. 여기서의 기준은 주로 가계(家系)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가로 이하의 격은 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임), 위에서 본 것과 같이 2단계 이상 하강은 비교적 많다. 특히 이쿠사카번 우도노 마사나가는 서출 장자 임에도 불구하고 2단계 이상 하강되었다. 그리고 가모카타번에서 하타모토의 가 2명 중 1명이, 가로 가 1명이 일족의 데릴사위이다. 그리고 이쿠사카번에서 하타모토 가 1명, 가로 가 1명이 데릴사위이다. 이는 서로 (근친)혼인을 통해 가격과 혈통을 유지하기 위함이다.<sup>36)</sup>

셋째. 위의 말기양자 선정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치몬에서의 양자 및 상속인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번주(당주)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몬 등과의 의논과 합의를 통해 결정하였다(笠谷和比古 2006, 48; 大森映子 2010a, 53).

넷째, 세대(항렬)를 무시하고 동생 혹은 손자를 양자로 하는 것처럼, 윤리와 명분보다는 법과 상황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위, 혹은 외손자(오카야마 번에서는 없으나 다른 번에서는 외손자가 양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가 먼 친척보다 감정상 더 가깝기 때문에 이들을 양자로 선정한다. 비록 근세 무가는 부계혈연을 중시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조부모 등 모계도 중시되었다. 그 예로 오카야마번 7대 번주 데릴사위인 나리토시는 모계, 즉 생모가 dotsori 번 5대 번주 하루미씨의 딸이다. 상속인 혹은 후계자 선정 범위가 넓기 때문에 (한국은 적장자 혹은 종손이 생득적인 것에 비해)유연성도 지니고 있다.

36) 그리고 오카야마번 3대 번주 쓰구마사와 같이 이혼(이것도 리엔이라고 하는데, 양자리엔은 이혼의 리엔과 구별하기 위해 養子差戻라고 함)도 꽤 있다. 오카야마번 무사의 이혼율이 10.6%를 점한다(磯田道史 2003, 101). 이케다가의 혼인과 이혼에 대한 것은 大森映子(1998)의 논문을 참고하라.

다섯째,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혈통을 중시하는데 왜 이성양자를 들이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케다 가에서도 이성양자를 들이어서 가를 유지하였지만, 30개 파가 있을 만큼 자손들이 번창하여 비교적 장기간 이성양자를 들이지 않고 부계혈연이 지속되었다(오카야마번은 7대부터 이성양자를 들임). 그러나 다이묘, 특히 무가의 경우는 (혈연이 지속되기를 바라지만) 이성양자 없이는 거의 지속이 어려웠다.<sup>37)</sup> 그래서 이들 간의 양자교환이 이루어진다. 오카야마번의 가로 6가(이중 3가가 이케다 이치몬)가 모두 이케다가와 양자 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들 사이에 서로 양자 교환이 행하였다. 다만 이키가(伊木家)와 헤키가(日置家)와 사이에는 전혀 양자 및 혼인관계가 없다. 이들은 이케다가와 개별적으로 주종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긴밀한 유대가 없다.<sup>38)</sup> 6가는 양자와 혼인을 통해서 혈통을 지속할 수 있고 또한 기득권을 공고히 하였다. 이뿐만 아니고 가로와 상급가신들과도 위와 같은 기제를 통해서 기득권을 공고히 하였다. 따라서 오카야마번은 상급가신(혹은 주류세력)이 견고하였다.<sup>39)</sup> 그리고 부계혈연이 끊기고 이성양자를 취해야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전술한 일본의 이에 내지는 ‘도세이’ 등 친족단체가 계보적 우월성과 경제적 조건 및 지리적 인접성의 조건

37) 비록 오카야마번의 사례는 아니지만, 이소다 미찌후미의 나가토(長門)키요스에번(清末藩)의 연구결과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는 1683년에 존재한 38개의 무가를 대상으로 이성양자를 취하지 않으면 몇 대가 지속할 수 있을까를 조사했다(이번은 이성양자가 34.2% 점함). 38개 중 7세대(8대째)까지 부계혈연이 지속된 가는 2개뿐이고(약 5%), 처음 3세대에서 혈연이 끊겨 이성양자를 들인 것이 26개(68%)이었다. 즉 만약 (이성)양자제도가 없었으면 약 70%가 절가되는 것이다. 38개 가 중 30개는 상속연도가 기재되어 부계혈연의 지속시간을 추론할 수 있다. 30개 중 50년간 부계혈연이 지속된 가는 19개 이고, 100년간 지속된 가는 8개(27%)이고, 150년간 지속된 가는 불과 3개(10%)이다(磯田道史 2003, 116).

38) 이에 대해서는 금후 논의한다.

39) 지면의 제약으로 구체적인 통계 및 이의 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금후 논의한다. 한 가지 부언하면, 막말유신기에 이들 상급가신과 현실불만을 갖은 중하급가신과의 분열이 일어나고 중하급가신이 메이지 유신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라는 제약을 받기에 혈연의 범위가 좁다. 한국의 문중은 (절대적)혈연에 기초하지만 제사라는 기제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혈연의 범위가 넓고 장기간 지속이 된다. 이는 일본의 가가 나에게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이나 관념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혹은 확대된 단체)의 지속 혹은 번영에 강하게 집착하는 것이다.

여섯째, 오카야마번 9대 번주 모찌마사가 원래 마쓰다이라 타다쿠니의 양자였으나 폐적된 것처럼, 이케다가의 다이묘 혹은 그 친족들이 양자로 갔다가 다시 실가로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요우시리엔(養子離縁, 즉 파양)이라 하고 양자를 맺는 것을 요우시토리구미(養子取組)라고 한다. 우선 토리구미를 보면, 양부와 양자의 실부(당주)와의 양자계약에 따라 성립하지만, 양자증문(證文)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증서에는 양자의 가독상속권, 분가, 지참금, 대우, 리엔 등에 관한 약정(取極)이 담겨져 있다. 가독 상속의 목적으로 양자 토리구미를 했으면, 양자가 적자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후에 양부의 실자가 태어나도 양자는 그대로 적자이다. 단 따로 이에 관한 계약이 있었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부가 실자에게 재산을 분여하고 분가를 세울 수 있다. 양부는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자를 리엔 할 수는 있어도, 양자증문에서의 약정 조건에 따라야 한다. 대릴사위와의 리엔인 경우 당연히 양자와 양부의 딸은 부부관계가 끝나는 것이다. 양자가 일단 가독을 상속한 이상 양부는 리엔을 시킬 수 없다. 단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면 가산을 분할하든가, 또는 (양부가 사망한 이후) 양자가 양모에게 모욕을 주거나 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경우 양모는 리엔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리엔의 경우 법에서는 지참금 및 물건 등의 반환 문제가 중시되는데, 양자는 지참금을 돌려받는다(中田薰 1926, 457-465). 무가에서는 리엔 할 경우 양가와 실가가 협의

하여 결정한다. 서민들은 계약서처럼 세세하게 규정되어, 지참금 반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난다.

리엔은 지참금 양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오카야마 번에 서는 근세 중기 이후 양자 리엔이 하급무사 사이에서 행해졌다(谷口澄夫 1995, 181). 처음에 하급무사에서 시작되었지만 상급무사로까지 퍼졌다. 봉급 삭감에 따른 가계의 궁핍의 상황에서 자식에 대한 감정을 버리고 지참금 양자를 들이었다. 여기서 이케다 가와 관련된 지참금의 사례를 살펴본다. 시이야번(椎谷藩, 1만석) 번주(데릴사위인) 호리 나오노리(堀直起)는 후계자를 확정하기 위해 데릴사위를 찾았다. 이를 중재한 것은 하타모토 이케다 나가시게(長惠)이다. 호리 나오노리가 요구한 양자의 조건으로, 첫째, 지참금은 세 상자(3천냥), 둘째, 지참금 외에 헤야스미(아직 가독 계승을 받지 않는 적자)를 고려하여, 가독 계승 전까지 이케다 측에서 매년 250냥을 지불할 것, 셋째, 종자(從者)는 1-2명으로 한다. 은거 중인 오카야마 번 5대 번주 하루마사(治政)는 다이묘가의 양자로서 이 정도의 부담은 적다고 생각하여, 이 사실을 6대 번주 나리마사(齊政)에게 알렸다. 나리마사는 동생 이케다 마사요시(政芳)와 서출 동생 나이젠(內善)이 있었는데, 마사요시가 가양자로 되었기 때문에 나이젠(이후 시이야번 13대 번주 호리 나오히루[堀直温])을 양자로 하기로 하였다(大森映子, 2003).<sup>40)</sup> 이와 같은 지참금 양자는 다이묘가에서도 종종 있었다. 이는 혈통(연)이 절대적이지 않고 현실 및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40) 오오모리 에이코는 지참금을 중요시하여 양자 연구미를 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후계자 결정을 빨리 확장하기 위하여 한 것이고, 지참금이 많지 않고 더구나 지참금이 연기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하루마사는 호리 나오히루가 요구한 것을 지참금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이후 이에 관하 사항은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 V. 결론

그동안 다이묘(혹은 무사)의 가 제도를 주로 서민의 이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인 가업(경영체)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물론 다이묘가(무가)와 ‘도세이’ 및 이치몬의 구조와 원리는 서민의 이에 및 도조쿠와 유사성을 지닌 면도 존재한다. 즉 가는 계보적 우월성과 경제적 조건 및 거주 조건 등으로 형성·유지되고, 본분가간에 중층적인 서열구조가 존재하고, 전체보다는 두 가 사이의 계보관계가 중시되고, 분가를 낸 가는 강한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오카야마번 이케다가 등을 대상으로 한 본고의 연구결과는, 무가는 서민의 이에가 가업을 중시하는 것과는 달리 혈통을 더 중시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예를 들면, 가독 상속의 본질이 혈통 및 유서에 따른 봉록 상속, 혈통의 자연적 순위를 중시, 혈통을 중시하는 양자상속의 원칙 등이다. 다만 그 혈통은 법 혹은 신분에 따른 규정이나 조건의 제약도 받고, 혈통이 ‘절대적’이 아니고 현실 및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적자선정의 유연성, 부계적 출계뿐만 아니라 모계도 존재, 윤리나 명분에 위배된 양자선정, 이성양자, 심지어 지참금양자 및 양자리엔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혈통에 대한 ‘절대적’ 명분이나 윤리보다는 현실 및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런 가 제도의 특징과 문화적 함의는 사회조직의 구조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예를 들면, 조직에 대한 헌신, 주종관계 및 상하관계(혹은 횡적관계), 집단주의 등이다. 금후 서민의 이에와 상호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막부 혹은 번의 정치구조와 문화를 분석하려고 한다.

본고는 ‘도세이’와 이치몬 등의 개념에 대해 문제제기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도조쿠와 촌락 간의 관계를 분석했지만 사료에 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금후 사료를 가지고 더 깊은 연구를 행할 것이다.

투 고 일: 2019년 1월 21일

심사완료일: 2019년 2월 07일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5일

## 참고문헌

### 1. 사료 및 지방지

- 『寛永10年侍帳』
- 『寛永19年侍帳』
- 『慶應3年士帳』
- 『諸家中知行留』
- 『備前藩士帳』
- 『備前家老略伝』
- 『備前池田家系譜』
- 『池田老臣累記』
- 『天保士帳』
- 『寛政重修諸家譜(卷五)』
- 『岡山市史(第三卷近世)』(1936-1938)
- 『邑久町史：通史編』(2009)

## 2. 저서 및 논문

- 박훈. 2018.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서울: 민음사.
- 임경택. 1999. “일본의 이에(家:イエ)의 실체에 관한 이론과 일본사회의 이에적(家的) 구성.” 『국제지역연구』8(3):105-118.
- 磯田道史. 2003. 『近世大名家臣団の社會構造』.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磯田道史. 2010. “幕末維新期の家老合意と御前會議.” 岡山藩研究會 編. 『藩世界と近世社會』. pp.49-80. 東京: 岩田書院.
- 谷口澄夫. 1995. 『岡山藩』. 東京: 吉川弘文館.
- 大間知篤三. 1993. “家の類型.” 福田アジオ·塚本学編. 『日本歴史民俗論集 3/家·親族生活文化』. pp.2-10. 東京: 吉川弘文館.
- 大島真理夫. 1993. “近世の村における家格制支配と本家·分家關係.” 福田アジオ·塚本学編. 『日本歴史民俗論集3/家·親族生活文化』. pp.314-341. 東京: 吉川弘文館.
- 大森映子. 1998. “岡山藩池田家における婚姻事例-分家との比較を中心として.” 『湘南國際女子短期大學 紀要』(5):124-144.
- 大森映子. 1999. “幕府旗本の公的年齡と相続事情-池田頼功の場合.” 『湘南國際女子短期大學紀要』(6):116-132.
- 大森映子. 2003. “大名家における養子取組-岡山藩池田家資料の分析から.” 『湘南國際女子短期大學紀要』(10): 148-166.
- 大森映子. 2010a. “大名相続をめぐる分家と一門.” 深谷克己·堀新編. 『權威と上昇原望』. pp.37-63. 東京: 吉川弘文館.
- 大森映子. 2010b. “備中鴨方藩の急養子相続-弘化四年の相続問題.” 岡山藩研究會 編. 『藩世界と近世社會』. pp.109-136. 東京: 岩田書院.
- 大森映子. 2014. “江戸時代における大名相続と御目見.” 『多摩大學研究紀要[經營情報研究]』(18):137-152.
- 渡辺浩. 2010. 『近世日本社會と宋學』.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藤田覺. 2012. 『太平のしくみ-江戸の行政と社會』. 東京: 岩波書店.

- 笠谷和比古. 1993. 『士の思想』. 東京：日本經濟新聞社.
- 笠谷和比古. 2006. 『主君「押込」の構造—近世大名と家臣団』. 東京：講  
譚社學術文庫.
- 福田千鶴. 1998. “近世前期大名相續の事態に關する基礎的研究.” 『史料館  
研究紀要』(29):1-110.
- 服藤弘司. 1982. “武士相續法.” 『相續法の特質』. pp.4-548. 東京：創文社.
- 石井良助. 1980. 『日本相續法史』, 東京：創文社.
- 野口朋隆. 2011. 『江戸大名の本家と分家』. 東京：吉川弘文館.
- 中跟千枝. 1970. 「日本同族構造の分析.” 『家族の構造：社會人類學的分  
析』. pp.425-445. 東京：東京大學出版會.
- 中野卓. 2000. 『有賀喜左衛門著作集Ⅳ：封建遺制と近代化』. 東京：未  
來社.
- 中田薰. 1926. 『法制史論集（第一卷）』, 東京：岩波書店.
- 川島武宜. 2000. “イデオロギーとしての家族制度.” 『日本社會の家族的  
構成』. pp.140-249. 東京：岩波書店.
- 村井良介. 2014. “戰國大名分國における領主層の編成原理をめぐって.”  
大阪市立大學日本史學會編. 『市大日本史』17:14-39.

### 3. 인터넷 자료

- “鵜殿氏.” <http://www.geocities.jp/keizujp2011/udono.html>(2018.7.21).
- “池田氏/池田政善.” <https://www.weblio.jp/wkpa/content/>(2017.3.3.2018.  
10.21; 2019.2.11).

# The family institution in the Early-modern Japan

## Daimyo family

- Focused on Okayama Domain of Ikeda family

Choung, Hayoung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Nanfang College of Sun Yat-sen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family system in the Early-modern Japan Daimyo family taking Okayama Domain of Ikeda as an example. The study shows that Daimyo family is not based on family occupation as was indicated by previous research but rather on consanguinity/blood relation/kinship which is both subject to legal provisions and is also changeable under certain conditions. As a result, succession to house headship is by nature the continuity of official salary in the family, and similarly, the flexibility in the selection of the legal successor, adopted son from a different family or the violation of ethical principles in adopted son, dowry adopted son and youxiliyan(養子離縁) Thus, compared with the influence of pedigree justification and ethics, it would be more greatly affected by reality and situation.

**Keywords:** Okayama Domain, family occupation, consanguinity, succession to house headship, adopted son